

의안번호	제 993 호
의결 연월일	. . . (제 회)

충청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

발의자	송미애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2년 3월 2일

충청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 
(송미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9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2년 3월 2일

발 의 자 : 송미애, 윤남진, 원갑희  
연종석, 이상정, 이상식  
허창원

### 1. 제안이유

-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·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김치산업 진흥을 위해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- 김치산업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김치산업진흥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4조)
- 김치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명시(안 제5조)
- 김치산업 진흥을 위해 학교·연구소·기업 등과 협력체계 구축(안 제6조)
- 충청북도 김치산업진흥위원회 설치·운영 규정(안 제7조)

### 3. 조례안전문 : 붙임

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2022.3.7. ~ 2022.3.14
- 관련부서 협의 : 농정국 농식품유통과와 협의
- 비용추계 : 해당 없음

## 충청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·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김치”란 「김치산업 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라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과 양념혼합 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제조한 것을 말한다.
2. “김치산업”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김치를 생산, 가공, 제조, 조리, 포장, 보관,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.
3.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진흥계획 수립·시행)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김치산업진흥계획(이하 “진흥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목표와 방향
2. 김치산업의 현황 및 전망
3. 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
4. 김치 및 김치재료 가공·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육성 시행계획 등 농어업·농촌 관련계획에

김치산업 진흥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진흥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.

제5조(사업지원 등)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법 제15조에 따른 김치품평회 및 국내외 김치 관련 박람회 참가
2. 법 제17조에 따른 김치 수출 등 세계화 촉진
3. 법 제20조에 따른 김치문화 계승·발전
4. 김치 및 김치재료 가공·유통 지원
5. 그 밖에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협력체계 구축)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·군 및 김치산업 관련 기관·학교·연구소·기업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7조(진흥위원회)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 김치산업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김치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진흥계획의 수립
2. 김치산업 시행에 따른 재정적 지원
3. 그 밖에 김치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위원회의 기능은 「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」에 따라 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신한다.

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충청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」 제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김치산업 진흥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김치”란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과 양념혼합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제조한 것을 말한다.
2. “주원료”란 제조하려는 김치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(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에 혼합된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이내의 원료)를 말한다.
3. “김치재료”란 배추, 무, 고춧가루, 마늘, 생강, 파, 소금, 젓갈 등 김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.
4. “김치산업”이란 김치를 생산, 가공, 제조, 조리, 포장, 보관,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제15조(품평회 개최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의 품질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촉진하며 대표상품을 선정·육성하기 위하여 김치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품평회의 개최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(세계화 촉진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산업의 육성, 김치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국가 간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김치의 국제규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.

제20조(김치문화의 계승·발전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단체는 김치문화의 계승·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김치문화의 계승·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 □ 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

제21조(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) 도지사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 제15조 및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를 설치·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
3. 수산분야 등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
4. 「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」 제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

#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

## ○ 첨부 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

① ~ ③ 생략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

## ○ 사 유

- 「충청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」은 동 조례 제정으로 인해 수반되는 신규 예산 편성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